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다자녀 군무원·군인 정년연장 및 특별진급 기회 부여〉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14호)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16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군무원 및 군인 자녀 현황	13

I. 제안경위

1. 김상훈의원안(「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 김상훈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4. 10.

다. 회부연월일 : 2025. 4. 11.

2. 김상훈의원안(「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 김상훈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4. 10.

다. 회부연월일 : 2025. 4.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상훈의원안(「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31조).

2. 김상훈의원안(「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의 현역정년을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으로 구분하고, 계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최저근속기간과 최저복무기간을 마친 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승진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에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30조 등).

Ⅲ. 검토의견

□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14호)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16호)은 적용 대상만 각각 군무원, 군인으로 다를 뿐 개정 취지가 유사하므로 병합하여 검토함.

□ 개정안은 2명 이상 자녀를 둔 군무원 및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군무원, 대위 이하의 장교 및 상사 이하의 부사관에게 특별승진·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승진) ① (생략)	제15조(승진) ① (현행과 같음)
② <u>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 군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u>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하거나 일반군무원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 ----- -----.
<신설>	1. <u>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 군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u> 해당하는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③ · ④ (생략) 제31조(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u>한다</u>.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u>사람</u> 2. 5급 이하의 군무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정년) ----- -----<u>하되, 자녀가 2명인 군무원의 정년은 61세, 자녀가 3명인 군무원의 정년은 62세, 자녀가 4명 이상인 군무원의 정년은 63세로 한다.</u>-----.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제8조(현역정년) ① ----- ----- <u>같이 하되,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자녀가 3명인 경우 2년,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3년의 기간을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년에 더한다.</u>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

현행	개정안
있는 장교(이하 “교수등”이라 한다)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u>다만, 다자녀를 둔 사람의 연령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자녀가 2명인 사람: 61세</u> <u>2. 자녀가 3명인 사람: 62세</u> <u>3. 자녀가 4명 이상인 사람: 63세</u>
<u>다만, 교수등과 군의과·치의과 장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과 연령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고,</u> <u>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u> <u>1.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u> <u>가. 대령</u> <u>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u> <u>연령: 54세에서 55세 사이.</u> <u>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u> <u>목에 따라 제1차 재임용 심</u> <u>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u> <u>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u> <u>제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u> <u>한다.</u>	③ <u>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수등과</u> <u>군의과·치의과 장교는 다음 각</u> <u>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과 연령</u> <u>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고,</u> <u>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u> <u>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u> <u>른 정년을 적용한다.</u> <u>1.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u> <u>가. 대령</u> <u>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u> <u>연령: 54세에서 55세 사이.</u> <u>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u> <u>목에 따라 제1차 재임용 심</u> <u>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u> <u>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u> <u>제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u> <u>한다.</u>

현행	개정안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7세에서 58세 사이 나. 중령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1세에서 52세 사이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6세에서 57세 사이 2. 군의과·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 대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 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 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 은 제외한다. 나. 중령: 51세에서 52세 사이 ③·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 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단서의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군 의과·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803호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 제30조(특별진급) ① ~ ③ (생략) <신설>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7세에서 58세 사이 나. 중령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1세에서 52세 사이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6세에서 57세 사이 2. 군의과·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 대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 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 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 은 제외한다. 나. 중령: 51세에서 52세 사이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 ----- ----- ----- ----- -----. 법률 제20803호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 제30조(특별진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위 이하의 장교 및 상사 이

현행	개정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정년 전역 등) ①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임용 심사의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수등의 경우에는 그 재임용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② (생략) 제53조의2(명예전역) ①·② (생략) ③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년보다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정한다. ④ ~ ⑥ (생략)	<u>하의 부사관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u>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 ----- -----. 제36조(정년 전역 등) ① ----- ----- ----- -----제8조제3항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명예전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제49조의2, 제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제8조제4항----- ----- ----- ----- ----- -----.

□ 현행 「군무원인사법」 제15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1)에 의하면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 군무원으로서 군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거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는 등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음.

「군인사법」(법률 제20803호) 제30조²⁾에서 군인의 경우에도

1) 「군무원인사법」 제15조(승진) ① 군무원의 계급 간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 군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하거나 일반군무원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 군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일반군무원
2.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일반군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일반군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일반군무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인하여 사망한 일반군무원

2) 「군인사법」(법률 제20803호, 시행일: 2025. 9. 19.)

제30조(특별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

전사·순직,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의 경우 특별진급할 수 있음.

정년의 경우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 제31조³⁾에 따라 만 60세 이고, 군인은 「군인사법」 제8조⁴⁾에 따른 연령, 근속 및 계급 정년을 적용받음.

□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⁵⁾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 고령화 심화, 군 병력 감소 등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출산 장려 정책은 국가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방부가 시행 중인 우대조치는 다음과 같음.

① 「군인사법」 제49조제4항제2호⁶⁾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1. 장교의 경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2. 부사관의 경우: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3)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사·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4) 「군인사법」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사·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50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중위, 소위: 15년

준위: 32년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5) 출처: KOSIS(통계청 국가통계포털)

6) 「군인사법」 제49조(휴직기간) ④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2.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제48조(휴직)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법률 제20803호, 2025.9.19. 시행 예정)

② 각 군 규정에 따라 3자녀 군인, 다자녀 군무원에 대한 동일지역
근무 보장, 당직근무 면제 등 인사 우대

③ 진급 및 장기복무 선발 시 가점 또는 참고자료로 반영

□ 다만, 현행 법령상 정년연장이나 특별진급과 같이 인사경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들은 다자녀를 둔 군무원·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군무원, 대위 이하의 장교
및 상사 이하의 부사관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첫째, 출산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임. 정년연장, 특별
승진·진급과 같은 인사상 혜택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과 경력 지속이 양립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줌
으로써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둘째, 계급·연령정년에 따라 비교적 조기에 전역하는 다자녀 양육
군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음.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이 제4호의 사
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
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
여야 한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
게 되어 필요한 경우

군인은 계급별 연령정년이 비교적 낮게 설정되어 있어, 대위(43세), 상사(53세) 등 일정 계급 이상에서는 충분한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역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계층에 대해 자녀 수에 따른 특별진급 혜택을 부여할 경우, 정년이 각각 50세(소령), 55세(원사)로 연장되어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장기적 소득 기반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공정성 및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한 특별승진·진급은 미혼자, 불임·난임자 등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불임이나 난임으로 인해 자녀 수를 늘릴 수 없는 이들에게는 제도 자체가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현행 특별승진·진급 제도는 복무 중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바, 다자녀 양육이 이러한 공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정년 연장은 국방부 인사 운영에 구조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정년이 연장될 경우 전역·퇴직인원 예측이 어려워지고, 인력 순환 및 배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계급별 인력 운용이 정밀하게 관리되고 있는 군 조직 특성

상, 인건비 증가, 병력 구조조정 지연, 군사적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선행 연구 없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조직 운영상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김상훈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들로 이들의 심사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률안 마련이 필요하고, 정년과 승진만으로 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개인의 가족계획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 참고자료: 군무원 및 군인 자녀 현황

○ 5급 이하 군무원 급수별 자녀현황('25. 4월 기준)

(단위 : 명)

계급	자녀없음	1명	2명	3명	4명 이상
5급	659	929	3,375	618	50
6급	1,981	1,559	3,709	602	47
7급	6,375	1,847	2,136	333	36
8급	7,471	676	428	56	5
9급	5,023	194	137	21	1
계	21,509	5,205	9,785	1,630	139

○ 다자녀 군 간부 현황 ('25. 2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6자녀	7자녀	9자녀
전 체	70,928	22,959	36,587	10,247	1,000	107	16	11	1
비 율	39.5%	12.7%	20.3%	6.3%					

*간부의 26%가 2자녀 이상

○ 계급별 전체인원대비 유자녀 군 간부 현황

구분	중령	소령	대위(장기복무자 기준)	상사	중사(장기복무자 기준)
3자녀 이상	15.3%	7.7%	0.3% (0.6%)	12.6%	1.0% (1.0%)
2자녀 이상	77.8%	41.9%	2.1% (4.7%)	48.5%	5.4% (5.8%)
1자녀 이상	93.6%	69.0%	7.4% (14.8%)	72.1%	13.2% (14.0%)

자료: 국방부